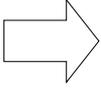


< 소득세 총설 >

1. 소득세 개요

1.1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개인의 소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계산구조하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 채택

1.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수입금액	총·수	총·수	총·수	총·수	총·수	총·수
				근로소득	연금소득	
(-) 필요경비	-	-	필·경	공제	공제	필·경
종합소득금액 ←	소득금액	+	+	+	+	+
(-) 소득 공제						
과세표준						
(X) 세율	: 5단계 초과누진세율(6%~38%)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1.3 소득세의 특징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소득의 범위	원칙	소득원천설		순자산증가설
	예외	순자산증가설 일부 채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소득 규정방식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		포괄주의
	예외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포괄주의		
과세단위	원칙	개인단위 과세		
	예외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		
과세방법	원칙	종합과세		
	예외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산구조로 과세	
		분리과세	일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2. 납세의무자

2.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의의	납세의무	납세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의무)	주소지(2이상이면 주민등록된 곳), 없으면 거소지(2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	국내사업장 소재지.(2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 특례 : 당기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발생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사례(주의 할 것)

- 국외 근무 우리나라 공무원,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함) 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이 경우 납세지 :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외항 선박 ·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 ① 국내에 있는 때 :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② 국외에 있는 때 :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세부사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 → 거주자 되는 시기	거주자 → 비거주자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3. 과세기간

구분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기한
원칙	1.1 ~ 12.31	다음 연도 5.1 ~ 5.31에 확정신고
예외	①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이민가면 출국일 전날)
	② 이민가는 경우	1.1 ~ 출국일 출국일 전날

4. 원천징수

구분		내용
종류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받는 자는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예납에 불과 · 받는자는 그 소득을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됨 → 종합과세
원천징수 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납세조합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배당, 원천징수대상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등